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계획



2026. 3.

경 기 도 교 육 청
(특수교육과)

목 차

I	추진근거 및 목적	1
II	채용 및 배치 절차	2
	1. 채용 자격 기준	2
	2. 채용 및 배치 절차	2
	3.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교 선정 절차	3
III	인건비 지원 기준 및 절차	4
	1. 지원 기준	4
	2. 지원 절차 및 방법	4
IV	복무 및 역할	5
	1. 근무 기준	5
	2. 주요 업무 및 역할	5
V	직무 역량강화 및 연수	7
	1. 추진 방향	7
	2. 각급 기관별 역할 및 내용	7
VI	행정사항	8
	1. 교육지원청	8
	2. 각급 학교	9
	교육지원청별 배정 현황	10
	참고서식	13
	업무서식	15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계획

I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제59조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5조

2. 목적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강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

3. 추진 방침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하는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배치
- 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중복장애 학생 수, 학생별 장애정도, 장애학생 수, 특수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학교 선정
- 다. 교육지원청별 배정된 정·현원에 따라 운영하고, 결원(미발령, 퇴직 등)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 진행(※ 특수교육지도사 학교 배치시 참고)
- 라.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노력
- 마. 특수교육지도사의 직무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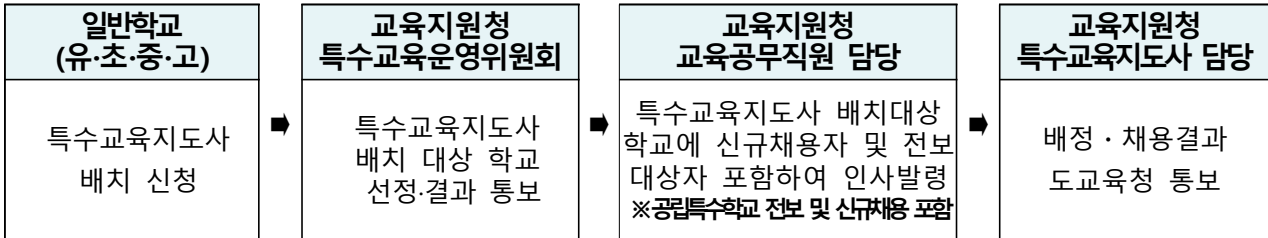
채용 및 배치 절차

1. 채용 자격 기준(필수)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자격을 가진자

2. 채용 및 배치 절차

가. 교육지원청(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채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노사협력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등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기준 적용
- 정·현원을 초과한 인력채용 금지
- 특수교육지도사 정·현원 범위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퇴직)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규채용 여부 결정
 - 결원(퇴직) 시 대체직 채용 등 일체의 임의 채용은 불가
 - 산가병가·육아·질병 휴직에 따른 대체직 채용은 제외, 교육지원청별 교육공무직원 담당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라 2013년 이전 학교자체예산으로 채용된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교육장 채용위임 직종이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학교자체 예산: 학교운영비, 발전기금 등)
 - 특수교육지도사(교육장 채용위임 직종) 결원으로 인한 총원 시 2013년 이전 학교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특수교육지도사(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 배치
 - 특수교육지도사는 학교장 채용 불가(사립 제외)
 - 교육비특별회계 외 재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 인건비·처우개선비 확보 방안 및 지원 중단 시 재원 확보 방안 강구
- 특수교육지도사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성비균형을 고려한 지원인력 확충
 -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4839(2015.9.8.)호.
 -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나. 사립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채용 공고(인력풀 우선 이용)

- 1)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내용을 홍보
- 2) 학교장은 적격자 채용 및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3.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교 선정 절차[교육지원청]

가.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2026학년도 입학 예정자 포함)

2) 배치교(유·초·중·고)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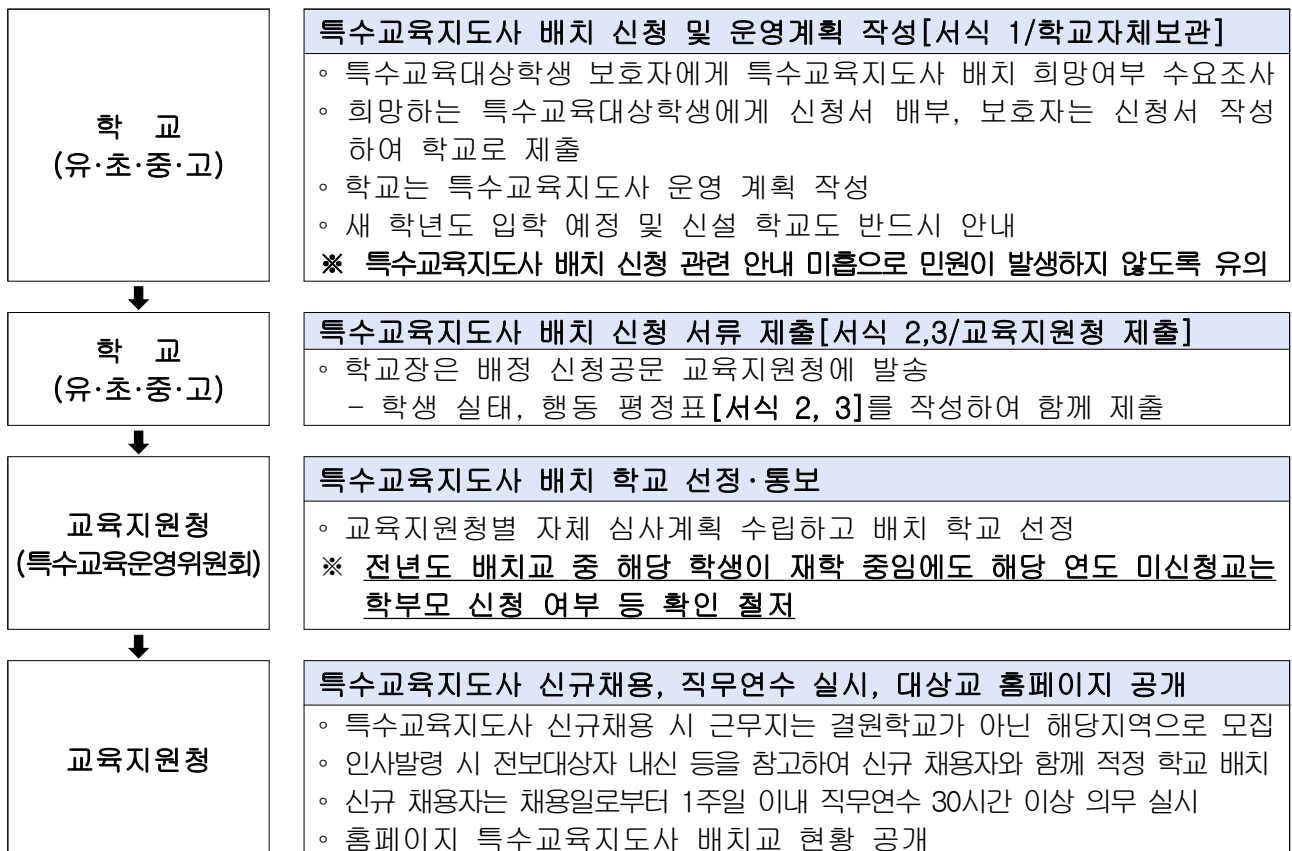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 세부기준은 지역별,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마련

☞ 중복장애 학생 수, 학생별 장애정도, 장애학생 수, 특수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학교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시 공립·사립학교 동일 기준에서 심의

3)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중복지원 배제

나. 선정 절차



※ (유의사항) 전 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학교를 포함하여, 당해 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배치신청서 제출

III

인건비 지원 기준 및 절차

1. 지원 기준

가. 임금지급 기준: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름

나. 인건비 지원 범위

1) 각급학교 실제 인건비 산출내역 범위 내 지원

2) 휴직, 휴가 등에 따른 대체직 인건비 지원(1일 대체근로자 지급 가능)

※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은 학교회계에서 부담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은 노사협력과에서 별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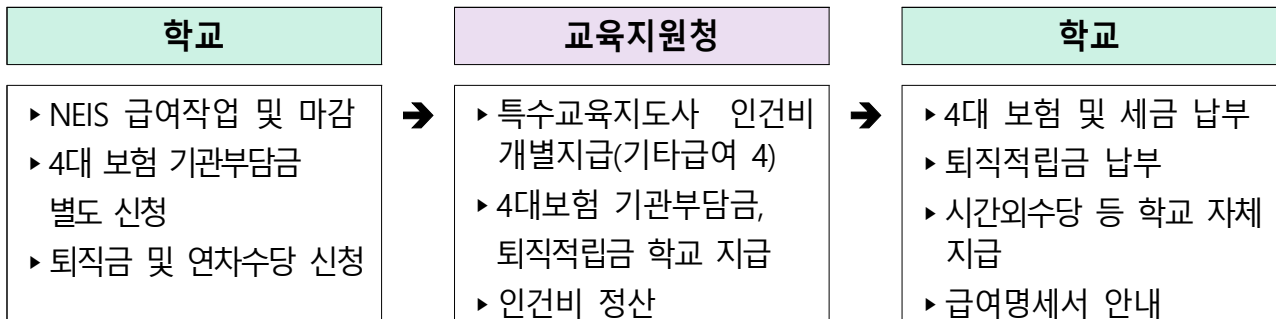
3) 방학중 생활안정지원금 및 직무관련수당(특수교육지원수당) 신설

※ 방학중 생활안정지원금(연 60만원, 매년 2월): 「교육공무직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계획, 노사협력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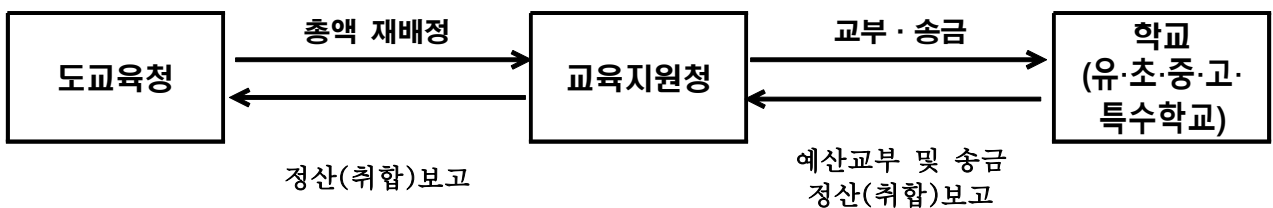
※ 특수교육지원수당(월 2만원): 2026학년도부터 적용(2026.3월)(단, 방학기간 속한 달은 일할계산)

2. 지원 절차 및 방법

가. 공립학교: 인건비통합직종,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지급



나. 사립학교: 현행유지, 학교에서 인건비 지급



1) 지역별 현원에 따라 인건비 재배정

2) 1인당 재배정 단가

(단위: 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합계	비고
2,144,500	231,535	2,376,035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27년 1월 수요조사 이후 재배정

1. 근무 기준

가. 1일 8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 중 새학년·새학기 준비 등을 위하여 학사일정 및 학교 복무계획 등에 따라 연간(3월~차년도 2월, 학년도 기준) 5일 근무 가능 및 여름·겨울 방학 각 1일의 법정 의무교육 수강일 근무

나. 유급휴일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 2)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3) 근로자의 날(5월 1일)
- 4) 임시 국·공휴일
- 5)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4일)
- 6) 광복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및 기타의 사유로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시 제수당 지급
라. 복무, 연차유급휴가, 휴가, 병가 등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노동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 등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개인책상·PC 등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특수교육지도사의 복무 등 관련하여 단체협약 내용 참고

2. 주요 업무 및 역할

가. 주요 업무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업무 담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 지원역할 담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제2조(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나. 역할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 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 탈의, 건강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학교 적응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만의 업무가 아님에 유의

다. 부과해서는 안되는 업무

- 1) 공문서 처리 등 교사의 고유 업무
- 2) 교무실 및 행정실 업무 보조
- 3) 차 심부름, 화단 관리 등의 학교 전체적인 잡무

라.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마. 운영·관리 강화

- 1) 특수학급, 통합학급, 해당학급에 배정·운영
- 2)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특수교육 지도사 업무 담당자가 담당

1. 추진 방향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 포함된 연수 운영
- 나. 맞춤형 행동지원 등 직무역량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도모
- 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체계 구축
- 라. 직무 관련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연수 다양화
- 마. 원격직무연수 운영 활용(국립특수교육원)
- 바.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수¹⁾ 실시
- 사. 각종 지원인력 연수 시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수운영 담당부서와 협조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4839(2015.9.8.)호.]

2. 각급 기관별 역할 및 내용

-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역량 강화 및 연수 지원
- 나. (특수교육원) 자체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지도사 온라인 직무연수 및 회복탄력성 연수 실시
 - 1) 특수교육지도사 온라인 직무연수
 - 연 2회 이상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방학 중, 연 15시간 이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안전사고 예방, 복무규정 등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실시(점자, 보행 지도, 수화, 보조기기 관리, 정보화 지원 연수 등)
 - 2) 특수교육지도사 회복탄력성 연수(“사과나무2”)
 - 2026. 8월 중 특수교육지도사 100명 대상으로 1박 2일 집합 연수
 -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특수교육지도사 직무 관련 회복탄력성 제고
 - 3) 연수참여는 방학 중 근무일(5일)과 법정 의무교육 수강일(2일)을 별도로 산정함
 - 4) 연수일정과 방학 중 근무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근무일정 조정
- 다. (각급학교) 신규 채용된 특수교육지도사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무)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지도·확인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고급) (원격) 직무연수 활용
- 라.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권장)

1) 교육현장 관계자(학교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등) 간 상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연수 개설 권장

2) “사람 간의 소통, 과정속의 균형, 나누는 기쁨, 무한한 미래”

1. 교육지원청

가. 특수교육지도사 배정, 채용, 연수, 직무수행 등 관리 철저

1)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업무 처리 철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조)

2)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예방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3) 특수교육지도사 배정교 현황 홈페이지 공개 철저(매년 3.1.자 기준)

4) 교육지원청별로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지도

나.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노력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요원 배치

- 자원봉사(대학생 교육봉사활동,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기부 등) 영역 및 지원인원 확대 노력

2)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특수교육보조” 신청·운영토록 안내

다. (퇴직보고)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 시 퇴직 보고 철저

1) 중도퇴직: 2026학년도 1학기 중 중도퇴직자 발생시 인력관리운영심의를 생략하고 신규채용 후 채용 결과 보고 [특수교육과-14786, (2025. 12. 24.)] 참조

(2026학년도 2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인력관리 심의 후 재안내)

2) 정년퇴직: 3개월 전까지 보고(8월말일 장년 5. 31.까지, 2월말일 장년 11. 30.까지) 【서식4】

3) 정년퇴직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현안사항 검토요구서와 함께 보고

라. (현안사항 검토 요청) 정년퇴직으로 결원 시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현안사항 검토 요청 【서식4】

마. (신규채용 결과 보고) 퇴직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 시 교육공무직원 채용·배치 완료 후 즉시 보고 [특수교육과-14786, (2025. 12. 24.)] 참조

2. 각급학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부모 대상 안내 철저
- 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예방
- 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등을 최대한 고려한 지원
- 마.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거 특수교육지도사 근무 성적평가 실시
- 바. 미배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및 각급학교 내 일 자리 사업 등 신청·운영
 - ※ 사회복지요원의 여학생 지원에 따른 인권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및 관리 철저
-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변처리 및 착탈의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노력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화장실 내 별도 공간 및 파티션, 커튼 등을 이용한 공간 분리
- 아. (퇴직보고) 교육지원청으로 정년퇴직자 보고 철저
 - 중도퇴직: 사유 발생 즉시 보고(사직원 포함)
 - 정년퇴직: 3개월 전까지 보고(8월말일 정년: 5.31.까지 / 2월말일 정년: 11.30.까지)

【별첨】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교육지원청별 배정 현황

1.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정·현원 배정 총괄(공립·사립)

연번	교육 지원청	2025학년도 정원 배정							2026학년도 현원							증감 (공사립)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1	수원	75	13	88	0	15	15	103	78	14	92	0	17	17	109	3	3	6
2	성남	55	28	83	0	0	0	83	55	30	85	0	0	0	85	0	2	2
3	안양 과천	35	13	48	0	0	0	48	36	14	50	0	0	0	50	1	1	2
4	부천	56	17	73	1	5	6	79	58	18	76	1	5	6	82	2	1	3
5	광명	35	0	35	0	0	0	35	35	0	35	0	0	0	35	0	0	0
6	안산	57	0	57	0	6	6	63	57	0	57	0	6	6	63	0	0	0
7	평택	50	0	50	0	13	13	63	57	0	57	0	14	14	71	7	1	8
8	군포 의왕	27	11	38	0	0	0	38	29	12	41	0	0	0	41	2	1	3
9	여주	19	0	19	2	0	2	21	20	0	20	2	0	2	22	1	0	1
10	화성 오산	97	14	111	0	15	15	126	107	15	122	0	16	16	138	10	2	12
11	광주 하남	48	0	48	0	33	33	81	50	0	50	0	35	35	85	2	2	4
12	양평	12	0	12	4	6	10	22	13	0	13	4	7	11	24	1	1	2
13	이천	23	12	35	0	0	0	35	23	12	35	0	0	0	35	0	0	0
14	용인	65	12	77	0	9	9	86	71	13	84	0	10	10	94	6	2	8
15	안성	18	5	23	0	3	3	26	19	5	24	0	3	3	27	1	0	1
16	김포	38	14	52	0	0	0	52	41	15	56	0	0	0	56	3	1	4
17	시흥	55	0	55	0	0	0	55	59	0	59	0	0	0	59	4	0	4
18	의정부	32	15	47	0	4	4	51	33	15	48	0	4	4	52	1	0	1
19	동두천 양주	32	12	44	1	0	1	45	36	12	48	1	0	1	49	4	0	4
20	고양	87	0	87	0	38	38	125	87	0	87	0	38	38	125	0	0	0
21	구리 남양주	75	13	88	0	0	0	88	79	13	92	0	0	0	92	4	0	4
22	파주	39	13	52	0	10	10	62	44	13	57	0	11	11	68	5	1	6
23	연천	6	0	6	0	0	0	6	6	0	6	0	0	0	6	0	0	0
24	포천	18	0	18	0	0	0	18	19	0	19	0	0	0	19	1	0	1
25	가평	8	0	8	0	0	0	8	9	0	9	0	0	0	9	1	0	1
합계		1,062	192	1,254	8	157	165	1,419	1,121	201	1,322	8	166	174	1,496	59	18	77

2.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배정 현황(공립)

가. 교육지원청

[단위: 명]

연번	교육지원청	2025 정원(A)			2026 정원(B)			정원 증감(C=B-A)			비고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유초 중고	특수 학교	계	
1	수원	75	13	88	78	14	92	3	1	4	
2	성남	55	28	83	55	30	85	0	2	2	
3	안양과천	35	13	48	36	14	50	1	1	2	
4	부천	56	17	73	58	18	76	2	1	3	
5	광명	35	0	35	35	0	35	0	0	0	
6	안산	57	0	57	57	0	57	0	0	0	
7	평택	50	0	50	57	0	57	7	0	7	
8	군포의왕	27	11	38	29	12	41	2	1	3	
9	여주	19	0	19	20	0	20	1	0	1	
10	화성오산	97	14	111	107	15	122	10	1	11	
11	광주하남	48	0	48	50	0	50	2	0	2	
12	양평	12	0	12	13	0	13	1	0	1	
13	이천	23	12	35	23	12	35	0	0	0	
14	용인	65	12	77	71	13	84	6	1	7	
15	안성	18	5	23	19	5	24	1	0	1	
16	김포	38	14	52	41	15	56	3	1	4	
17	시흥	55	0	55	59	0	59	4	0	4	
18	의정부	32	15	47	33	15	48	1	0	1	
19	동두천양주	32	12	44	36	12	48	4	0	4	
20	고양	87	0	87	87	0	87	0	0	0	
21	구리남양주	75	13	88	79	13	92	4	0	4	
22	파주	39	13	52	44	13	57	5	0	5	
23	연천	6	0	6	6	0	6	0	0	0	
24	포천	18	0	18	19	0	19	1	0	1	
25	가평	8	0	8	9	0	9	1	0	1	
합계		1,062	192	1,254	1,121	201	1,322	59	9	68	

나. 공립특수학교

[단위: 명]

연번	교육지원청	학교명	2025 정원 (A)	2026 정원 (B)	증감 (C=B-A)	비고
1	수원	이름학교	13	14	1	
2	성남	성남혜은학교	13	14	1	
3	성남	성은학교	15	16	1	
4	안양	안양해솔학교	13	14	1	
5	부천	부천상록학교	17	18	1	
6	군포의왕	의왕정음학교	11	12	1	
7	화성오산	화성나래학교	14	15	1	
8	이천	다원학교	12	12	0	
9	용인	용인다움학교	12	13	1	
10	안성	모두학교	5	5	0	
11	김포	새솔학교	14	15	1	
12	의정부	송민학교	15	15	0	
13	동두천양주	양주도담학교	12	12	0	
14	구리남양주	경은학교	13	13	0	
15	파주	자운학교	13	13	0	
계		15교	192	201	9	

3.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현원 배정 현황(사립)

가. 사립 유·초·중·고

[단위: 명]

연번	지역별	설립별	2025 현원 (A)	2026 현원 (B)	현원 증감 (C=B-A)	비고
1	성남	사립	0	0	0	
2	부천	사립	1	1	0	
3	여주	사립	2	2	0	
4	양평	사립	4	4	0	
5	동두천양주	사립	1	1	0	
계			8	8	0	

나. 사립특수학교

[단위: 명]

연번	지역별	학교명	2025 현원 (A)	2026 현원 (B)	현원 증감 (C=B-A)	비고
1	수원	수원서광학교	9	10	1	
2	수원	자혜학교	6	7	1	
3	부천	부천혜림학교	5	5	0	
4	안산	명혜학교	6	6	0	
5	평택	동방학교	10	11	1	
6	평택	에바다학교	3	3	0	
7	화성	해원학교	5	5	0	
8	화성	한우리학교	2	2	0	
9	오산	성심학교	8	9	1	
10	광주	광주새롬학교	5	5	0	
11	광주	동현학교	5	6	1	
12	광주	인덕학교	6	7	1	
13	광주	한사랑학교	8	8	0	
14	하남	성광학교	9	9	0	
15	양평	창인학교	6	7	1	
16	용인	용인강남학교	9	10	1	
17	안성	한길학교	3	3	0	
18	의정부	희망학교	4	4	0	
19	고양	명현학교	14	14	0	
20	고양	밝은학교	5	5	0	
21	고양	홀트학교	19	19	0	
22	파주	새얼학교	10	11	1	
계		22교	157	166	9	

○○○○학교

수신자 ○○교육지원청

(경유)

제목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서류 제출

1. 관련 : 특수교육과-0000(2023.00.00.)
2.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및 신청 학생 현황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2026학년도 입학예정자 포함)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신청 학생 수	배치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안내	
특수학급(A)	일반학급(B)	계(C=A+B)		보호자	특수교육지도사
			※ 특수교육지도사 신청 학생 수는 [붙임1] 및 [붙임2] 제출매수와 일치	(예시) ○	(예시) ○

- 붙임 1.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학생 실태 00부.
2.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학생의 행동 평정표 00부.
3. 기타 교육지원청 요청 서식 00부. 끝.

○○○○학교장

교사

00부장

교감

교장

시행 00고등학교-0000(20**, **, **)

접수

()

우 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0

전화 031)0000-0000 /전송 031)000-0000

/

/

/ 비공개

○○○○학교

수신자 ○○교육지원청

(경유)

제목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미신청 현황 제출

1. 관련 : 특수교육과-0000(2023.00.00.)
2. 2026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미신청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특수교육지도사 미신청 현황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2026학년도 입학예정자 포함)			특수교육지도사 미신청 사유	미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안내	
특수학급(A)	일반학급(B)	계(C=A+B)		보호자	특수교육지도사
			(예시) 보호자 미희망 / 졸업 또는 전출 등 으로 지원 필요 학생 감소(※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예시) ○	(예시) ○

끝.

○○○○학교장

교사

00부장

교감

교장

시행 00고등학교-0000(20**.**,)**

접수

()

우 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0

/

전화 031)0000-0000 /전송 031)000-0000

/

/ 비공개

【별첨】 업무 서식

【서식 1】 보호자 신청서(보호자→학교, 학교 자체 보관)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사업명 :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 사 업 기 간 : 20 . 3. ~ 20 . 2.
- 사 업 내 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개인육구 지원, 적응행동 지원, 기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 신청 현황

학생현황	학교명		생년월일	
	학생명			
가족관계 (보호자)	이름 :	(관계:)		
	이름 :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지원요구 사항				

20 . . .

신청인: (인)

()학교(유치원)장 귀하

【서식 2】 학생 실태(학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학생 실태

학생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명			학년 반		
주 소					
보호자 연 락 처	(관계)	성명(),	H · P ()		
건강상태 (과거병력)					
약물복용	장애관계로 복용중인 약물 :				
담당교사 명	통합학급 담임교사 : 특수학급 담임교사 :				
통합상황	일반학급 (), 특수학급 : 전일()/시간제()				
장애상태	장애영역 (특수교육법 상)	장애등록 현황(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록여부	장애영역	장애 정도	
		(○,×)			
학생의 발달상황	강점 : 학습면 : 신변자립 : 기타 : 좋아하는 것 : 약점:				
방과후 활동	활동명 : 기관 : 요일 및 시간 :				

※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서식 3】 학생 행동 평정표(학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 학생의 행동 평정표(예시)

학생명 :

교 사 : (인)

문항	내 용	교 사 응답란
1	혼자 걸어다니거나, 보조구를 이용하여 혼자 이동한다.	
2	혼자 밥을 먹는다.	
3	혼자 대소변을 본다.	
4	고무줄이 든 바지를 혼자 입고 벗는다.	
5	묻는 말에 '예', '아니오'라고 답한다.	
6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적절히 사용한다.	
7	자신의 이름이나 10 이하의 숫자를 읽고 쓴다.	
8	혼자서 학용품 등 물건을 살수있다.	
9	가위로 선 따라 종이를 자른다.	
10	스스로 위험한 일이나 상황을 피한다.	
11	공부시간 중 무단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12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남을 밀고 때리는 일이 없다.	
13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손등 물어뜯기 등)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몸 흔들기 등)을 하는 일이 없다.	
14	지시된 과제를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수행한다.	
15	학생을 도와주는 친구가 학급에 한 명 이상 있다.	
16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또래들과 어울려 논다.	
17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한다.	
18	위의 문제행동 외에 학생이 지니고 있는 문제행동은 무엇입니까? ()	
19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움을 원하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	
20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움을 원하는 생활분야는 무엇입니까? ()	

※ 행동 평정표는 예시자료이며,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춰 변경 사용

※ 작성요령: 1~17번은 2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학생이 물음과 같은 행동을 2번 다
제대로 행하면 ○표, 1번 정도 행하면 △표, 1번도 행하지 않으면 × 표시

【서식 4】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지도사) 퇴직보고 및 현안사항 검토 요구서

☐ 퇴직보고

직종명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퇴직(예정)일자	퇴직사유	비고
특수교육지도사							

☐ 현안사항 검토 요구

검토 안건 요지 (현안사항)

검토대상
(사업)명

검토 사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과)

(작성 예시)

○ 퇴직에 따른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지도사) 정원 내 신규채용

- 채용 인원 : 2명

직종	2026.8.31 기준 현원 (a)	2026.9.1. 기준		신규채용 수요인원
		현원(b)	결원(b-a)	
특수교육지도사	50명	48명	2명	2명

- 2026년도 8월 퇴직(정년)에 따른 교육공무직 정원 범위 내 현원 2명 채용

○ 신규채용 희망 현황

연 번	교육지원 청명	학교명	특수학급 현황		채용 (예정) 인원	채용사유
			학급수	학생수		
1	00	00초			1	- 정년(2026.8.31.)에 따른 결원
2	00	00중			1	- 정년(2026.2.28.)에 따른 결원
합계					2	